

[서식 예]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 1. 원고는 2018. 6. 18. 원고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를 산책하던 중, 당시 만10세에 불과하여 책임능력이 없던 소외 ○○○가 아파트 5층에서 원고를 겨냥하고 던진 테니스공에 안면부를 맞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갑 제1호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2. 피고는 가해자인 소외 ○○○의 부(父)로 가해자의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으로, 가해자 소외 ○○ ○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습니다(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그런데 피고는 평소에 가해자 소외 ○○○의 감독을 게을리하여 가해자 소외 ○○○가 발생시키는 소음이나 장난이 잦아 이로 인한 아파트 단지 내 민원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피고는 가해자 소외 ○○○와 함께 있었고 가해자 소외 ○○○가 밖으로 물건을 던지며 장난을 치는 것을 알았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이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 3. 그렇다면 피고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인 가해자 소외 ○○○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4. 원고는 가해자 소외 ○○○의 행위로 인하여 코뼈가 함몰되고 상악부에 타박상을 입어 약 4,000,000원의 기왕치료비가 발생하였고(갑 제3호증 상해진단서 및 치료비확인서), 치료 기간 동안 경찰서와 병원을 오가며 정신적 손해를 입은 바,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치료비 4,000,000원에 위자료 1,000,000원을 더한 총 5,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5.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5,000,000원 및 불법행위일인 2018. 6. 18.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사건사고사실확인원1. 갑 제2호증가족관계증명서1. 갑 제3호증상해진단서 및 치료비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각 1통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통1. 소장부본1통1. 송달료납부서1통

20 . 6. 25.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 할 법 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②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 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2%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수 있음: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지연손해금